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2022.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

(안 제1조, 제2조, 제5~7조 수정)

-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특정 상황’, ‘대면업무’, ‘구체적인 업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종사자’ 등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 내용 정비

(안 제7조제2항 수정, 제7조제3항 삭제)

-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과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가 지정되는 것을 고려,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

다.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부칙 제2조)

-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대행하는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규정 - 요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울러,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위원회(법 제9조)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해당 지역내 ①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②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③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위원회 회의는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하는
-

경우 등*에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그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③ 지원계획(법 제11조 제4·5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④ 행정·재정적 지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 국가는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⑤ 포상 및 평가(법 제14조)

○ (포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법 제12조제2항)

○ (정부업무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평가

⑥ 협조 의무(법 제15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7. 7. ~ 7. 27.)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로 하고,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지원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제목 “(필수업종의 지정)”을 “(필수업무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9조”를 “제9조”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필수업종을”을 각각 “필수업무를”로 한다.

제7조 제목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각 업종”을 “필수업무”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로, “지원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를 “수립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2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 사업 추진”을 “보호 및 지원”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1호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2.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u>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u>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대면업무</u>”란 <u>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u> ----- <u>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u> --- ----- <u>지원함</u>-----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필수업무</u>”란 <u>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u> <u>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u> <u>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u></p>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4. “노무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5.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

심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종종사자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다.

6. “노무수령자”란 필수노동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성북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필수업종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대상 필수업종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필수업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4.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

-----.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필수업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 필수업무를 ---
-----.

② -----
--- 필수업무를 -----
-----.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 필수업무 -----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북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생략)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생략)

-- 필수업무-----

-----.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 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생략)

제11조(시행규칙)(생략)

-----1. -----
필수업무 -----

2.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현행 3호와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현행 10조와 같음)

제12조(현행 11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내용이 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